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인

2024년 2월 6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

◉법률 제20232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유해화학물질"을 "유해성·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"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"인체급성유해성물질"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6의2. "인체만성유해성물질"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6의3. "생태유해성물질"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10의3. "유해성미확인물질"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·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.

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"100킬로그램"을 각각 "1톤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"100킬로그램 이하로"를 "1톤 미만으로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 중 "자"를 "자."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0조제1항·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.

제14조제6항제1호 중 "자료"를 "자료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.

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3(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·평가·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 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"유독물질"을 "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유해성심사"를 "유해성심사(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, "유독물질"을 "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(이하 "인체등유해성물질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유독물질"을 "인체등유해성물질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유독물질"을 "인체등유해성물질"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2호 중 "유해화학물질"을 "인체등유해성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유해성미확인물질

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화학물질의 명 칭"을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(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,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
- 3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

제4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(이하 "수정등"이라 한다)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
- 2.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
-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, 수정등에 관한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3(자료유출사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이하 "자료유출사고"라 한다) 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·장소·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(이하 "보호자료"라 한다)의 누설 또는 분실
 - 2. 보호자료의 보관시설·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
 - 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
 -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 유출사고 조사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·장비를 교체하 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신규화학물질의 등록·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,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,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,

등록・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・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,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,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고,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